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04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백승아·진선미·강경숙

서미화 • 허성무 • 박지원

황정아 · 문금주 · 김 윤

최기상 · 정일영 · 최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지출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역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71,176가구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973시간, 가구당 본인부담금 평균금액은 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 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 전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한다)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 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 설>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 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 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한다)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 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 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 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 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

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u>지급한</u>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 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⑧ (생 략)
-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 다.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 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 2. (생략)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u> </u>
<u>⑧</u> · <u>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u> </u>
1
-제7항
<u>- 11 0</u>
2. (현행과 같음)
<u> </u>

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	
제"라 한다.	
<u>⑪</u> (생 략)	ႍ (현행 제11항과 같음)